

◆ 중랑구고시 제2019-10호

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[단독주택지 15BL]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30호(2015.08.06.)로 변경결정된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21일

중 랑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취지 :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[단독주택지 15BL]에 따라 상봉동 486번지 대지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.

2. 지구단위계획(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○ 대지의 분할

구분	지 번	계획내용	비 고
신설	상봉동 486	필지분할가능선	-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지분할가능선 신설 - 필지분할 가능선을 중심으로 양쪽 10m 범위내에서 필지를 분할하여야 함.(분할예정면적 : 359.2㎡ → 183.9㎡, 75.3㎡)

※ 기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 없음

3. 관계도서 :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(붙임)

※ 붙임 지형도면은 “참고용”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.

4.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개발과(☎ 2094-2179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신내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 < 15BL : 중랑구 상봉동 486 >

